

제 정 : 2021.01.04.

일부개정 : 2022.03.24.

일부개정 : 2023.06.29.

# 이사회 규정

2023.06.29.



# 이사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

-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의 요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소요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(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)

- ①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회사가 속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6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7조 (대표이사 및 의장 선임)

-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정관 제41조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가 그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.
-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에서 정한 선임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의장 직무 대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8조 (선임사외이사)

-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(이하 "선임사외이사" 라고 한다)를 사외이사들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외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
  - 2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
  - 3.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성과에 대한 검토
- ④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  1. 인사위원회 :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  2. 감사위원회 : 3명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.
  3. 재무위원회 :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4. ESG위원회 :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10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씩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11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 
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

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④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제11조의 소집권한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14조 (질서유지)

- ①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나.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
- 다. 정관의 변경
- 라.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
- 마. 회사의 해산, 계속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- 바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사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아.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자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차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카. 이익배당, 주식배당 결정
- 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- 파. 이사의 보수
- 하. 상법 제542조9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
- 거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연간 경영계획의 승인
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다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라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마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
(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)
- 바.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사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

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나.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- 다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라. 주식의 액면분할, 병합
- 마. 신주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
- 바. 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)의 발행
- 사. 건별 자본총계의 5% 이상 회사채의 발행

- 아. 건별 자본총계의 5%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
- 자.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.5% 이상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사항
- 차. 지분투자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5% 이상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
- 카.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본총계의 2.5%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
- 타. 건별 10억원 이상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
- 파.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
- 하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

#### 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가.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나.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임 승인
- 다.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기회 (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)의 이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

#### 5. 기타

- 가.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
- 나.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
- 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준법통제기준 준수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16조 (권한 위임 사항)

- ① 이사회에서 재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건별 자본총계의 5% 미만 회사채의 발행
2. 건별 자본총계의 2.5% 이상 5%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
3.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50억원 이상 자본총계의 2.5% 미만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항
4. 지분투자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1% 이상 5% 미만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
5.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50억원 이상 자본총계의 2.5%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
6.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.5%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
7.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.5%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Bond 및 L/C Line 등의 체결 및 그 기간의 연장
8. 건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
9.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한국거래소 공시 및 외부기관에 재무위원회의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
10. 계열회사를 위한 책임준공계약 체결
11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서 ESG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결정 사항
2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③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
2.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50억원 미만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항
3. 지분투자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1% 미만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
4.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50억원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
5.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
6.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Bond 및 L/C Line 등의 체결 및 그 기간의 연장
7. 건별 5억원 미만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
8. 특수관계인과의 5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



9. 상법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산운용 및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련한 사항, 이사회 결의 및 재무위원회 결의를 통해 기 승인한 안건에 대해 원안의 내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리 등의 수정 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17조 (긴급집행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사전집행하고 즉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18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의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 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### 제19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 (간사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### 제21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